

※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한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은 본 계획서에 의거 기 요구한 것으로 하며, 세부추진일정은 조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예산집행진상조사결과보고서

1. 조사의 목적

'99. 3. 22. 일부 언론에 보도된 우리구의회 「'98년도 제61회 정기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의 부당한 집행」 보도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 1999년 3월 29일 ~ 4월 7일 (10일간)

나. 조사대상 및 사안의 범위

- 의회사무국
- 언론에 제보한 의원
-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중 '98년도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다. 조사반 편성

- 조사 총괄 : 예산집행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간 사	조사위원	전문위원	사무보조직원
안주영	이종환	강두석 배기한 손병옥 신길철 조길형 (가나다순)	유 재 한	조일연 구기모 노병훈

3. 보도내용(요약)

가. 보도일자 : '99. 3. 22 (월)

나. 언론사

- 신문 :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 방송 : KBS 9시뉴스, SBS 8시뉴스

다. 기사내용

-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식당 등에서 관용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만들어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만들었다.
- 서울 영등포구의회 손영상 의원은 회의운영경비 지출내역에는 구의원들이 지난 12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8번 식사를 하고 276만 8,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 예산을 불법 전용하였다고 말하며, 각 구청마다 구역에서 수십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지출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이 현금으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무국 관계자는 의원들이 회기중 회의가 늦게까지 계속되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 식비를 아껴 모아 달라고 요청한 부탁을 거절치 못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해명하였으며 문제가 된 135만원은 2월 25일 모두 구청으로 환수 조치하였다.

4. 조사일정

일시	조사대상	장소	조사사항	비고
'99. 3.29(월)	의회사무국	제1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비 집행 서류 및 현장확인 ·참고인 출석요구 결정	
'99. 3.31(수)	손영상 의원	제1소회의실	·참고인출석 ·사건경위 청취 ·질문 답변	
'99. 4. 1(목)	최락희 의원	제1소회의실	·참고인출석 ·사건경위 청취 ·질문 답변	
'99. 4. 2(금)	담당 공무원 이현영 (7급)	제1소회의실	·예산집행현황 보고 ·질문 답변	
'99. 4. 4(일) '99. 4. 5(월)	공 휴 일			
'99. 4. 6(화)	의회사무국	제1소회의실	·종합의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5. 관련자 조사내용

가. 손영상의원(제보자) 진술

-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 예결위원으로서 식대마련에 대하여 듣지도 못하였고 또한 동의한 바 없으며 참석하지도 않은 예결위 식비가 지출되어 있어 사무국에 예결관련 집행부분만 직접 자료를 받았으며, 의정활동중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에 대한 경중을 울리고 혈세를 알뜰하게 써달라는 의미였던 바 우리의 회가 부정적으로 방영되어 동료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답변

나. 최락희의원(제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술

- 카드깡으로 식비마련 경위에 대하여
 - 예결위 활동기간중 개인사정이나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인하여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판단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코자 회기중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예결위 활동 종료 후 조출한 식사를 하려고 하였음.

- 비용인출 경위에 대하여
 - 예결위 활동기간인 '98. 12.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8회 276만 8,000원의 식사비중 4회는 실제로 식사를 하였으며, 나머지 4회 135만원을 현금화 하였음.
- 준비한 식비로 예결위원과 식사를 안하고 반납한 이유는
 - 예결위원들간에 식사를 하지 말고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납하자는 의견도 있어 사용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몇몇 예결위원의 동의와 위원장의 결정으로 지난 2월 25일 반납하였음.
-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사무국 공무원의 반응에 대하여
 - 담당공무원은 처음부터 반대하였으나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시기만 다를 뿐 전 위원이 같이 식사하려는 것이므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음.
- 앞으로의 대책과 현재의 심경에 대하여
 -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되어야 하며, 이번 예결위 지출건은 예결위 위원들이 지출방법을 조금 달리 하였을 뿐인데 언론에서는 큰 범죄인양 보도하여 우리구 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실추시켜 대단히 죄송하며, 사무국 직원은 처음부터 법률에 충실하려 노력하였으며 단지 현금인출과 보관만을 하였고 또한 전액 반납하였으므로 선처를 요망함.

다. 담당공무원 이현영(7급) 진술

- 예결위에서 부적절한 비용마련을 요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으로서 불미한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지난 해 12월 10일경 최락희 예결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들이 연말인 관계로 개인형편상 또는 지역의정활동과 행사 등 바쁜 일정으로 식사도 같이 못하는 실정이므로 예결위 활동이 끝난 후 조출한 식사를 하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식사비용을 현금화 해줄 것을 요청하시어 이를 반대하였으나 예결위 위원간에 협의된 사항이며 예산을 절약하여 시기만 다를 뿐 전 위원을 위하여 쓰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답변.
- 카드결제과정과 식대비 보관과정에 대하여
 - 예결위 기간중 총 8회 식사중 4회는 실제로 식사를 하여 사무국 직원이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4회 135만원을 현금화하여 사무국 금고에 보관하였음.
- 예결위원 식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경위에 대하여
 - 위로식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간 식사는 하지 말고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를 하자는 의견과 부적절한 예산이므로 반납하자는 등 의견일치가 안 되어 사무국에서는 '98회계연도 폐쇄기가 끝나기 전에 반납하자고 위원장에게 건의하여 다수 예결위원의 동의와 위원장의 반납결정으로 2월 25일 영등포구금고에 반납시켰음.
- 이번 사건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심경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 예결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보다 성실한 보좌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 위상에 손상을 입혀 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근신하고 더욱 정진하여 올바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망하였음.

6. 조사결과

가.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언론에 보도된 예산편법지출건에 대하여 보도자료 제보의원,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담당 공무원, 담당주사,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들어본 바,

- 제보자 손영상 의원은 '99. 3. 31 본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예결위원으로서 최락회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예결위 활동이 끝난후 전 위원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자 식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지 못하여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으며 하지도 않은 식사비 지출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평소 의정활동 시 집행기관에서도 판공비, 특수활동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의 자료제출 요구 시 시원한 답변도 듣지 못한 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공개행정의 정착을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증언하면서 본의 아니게 언론에 보도되어 여러 의원님과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한 사과를 하였으며,
-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락회 의원은 정기회 당시 예결위원들이 상임위 활동 외에 예결위원회 활동을 더 하고 있으며 예결심의 활동시 개인형편 또는 지역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결위 종료 후 전 위원이 모인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자 조출한 식사를 하려는 뜻에서 식사하지 않은 식사매출전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집행토록 하였고 그 비용을 현금화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인출과 보관을 하게 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 비용마련은 위원장이 몇몇 예결위원들과 합의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지며,
- 그 이후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예결위원과 다시 협의하여 반납 결정하는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 일에 대하여 전 의원에게 사과하고 본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음.
- 또한 담당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현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명령이나 지시가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록 위원장의 순수한 취지의 요청이기는 하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일에 동조하여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됨.
- 그러나 참고인의 답변내용과 관련서류 등을 통하여 조사한 바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당시의 정황이나 의회의 행태로 보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그 행위 또한 소극적이고 단순한 심부름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부적절하게 인출 보관하고 있던 135만원에 대하여 예결위원과 예결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98회계연도 폐쇄기 전인 '99년 2월 25일 영등포구금고에 반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치유한 정상이 참작되어짐.

7. 향후조치

- 가. '98년도 제6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락회 의원은 이 건과 관련하여 비록 예결위원들간에 협의한 사항이고 순수한 의도이기는 하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원이 사소하나마 판단을 그르쳐 큰 물의를 일으키도록 한 책임이 있음으로 해당 예결위를 대표하여 공개회의에서 사과토록 하고,
- 나. 사무국장, 담당주사 및 담당자는 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다함은 물론 의원들의 요구라 할지라도 규정에 맞지 않는 사안은 충분히 이해시켜 그릇됨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는 바 엄중히 문책하여야 하나, 물의를 일으키도록 한 데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의회의 행태나 본 건의 전말을 살펴볼 때 의원의 요청을 단 한마디로 거부하기 곤란한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경고 조치토록 본 조사특위에서 의결하였으며,
- 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사무국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임.